



Korean Tax Update Samil Commentary

September 13, 2024

Table of Contents

Tax News

-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 정부,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
- 정부,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 발표
- 정부,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

최신 주요 개정 동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50호, 2024. 8. 20.)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65호, 2024. 8. 30.)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66호, 2024. 8. 30)

최신 예규·판례

-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과 주식을 미보유한 본인의 특수관계 여부
- 필지가 동일한 토지의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의 토지 평가방법
- 제조업용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 기한 후 신청 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할납부 특례 적용 여부

Tax News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13일 ‘지역경제 도약 및 서민 생활 안정’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지원’,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합리·효율적인 과세체계 마련’에 중점을 둔 ‘2024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는 바, 이번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장기 관행적 감면에 대한 감면율 조정 등의 증가요인과 양육지원 감면 확대·주거안정 감면 신설 등의 감소요인에 따라 약 313억 원으로 추정되고,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 중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개정안 주요 내용
지방세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류금지 재산·제3자 재산 등 압류 시 소멸시효 중단 사유 미적용 명확화 • 허가·처분 취소 등 시행령에서 규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 시 모든 지방세(신고납부·보통 징수 세목)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명확화 • 배우자·4촌 이내 혈족을 이의신청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한 신청금액 기준 완화 (세액 1천만 원 미만 ... 2천만 원 미만) •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 유무에 관계없이 납부일의 익일로 개선
지방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폐지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 폐지) •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따른 지방소득세 시행시기 2년 유예 (2025년 1월 1일 ... 2027년 1월 1일) •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면제 특례 2년 연장 (2024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상향 조정 (2024년 5% + 2025년 이후 3% ... 2024년 이후 5%)
지방세 특례 제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의무에 관계없이 위탁 직장어린이집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허용 및 위탁 직장어린이집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율 확대(50% ... 100%) 등 • 신축 소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법 25% + 조례 25% = 최대 50% 감면) • 적격분할·현물출자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율 축소(75% ... 50%) 및 코스닥상장법인 과점주의의 취득세 비과세 명확화 등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시 감면대상 업종 규정 개선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 ... 고시로 위임) • 등록면허세 중과 배제대상에서 특수목적법인·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 제외



정부,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 발표

정부는 임차인들이 적정수준의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단지별 100세대 이상)로 장기간(20년 이상) 임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신유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은 기업의 목표와 여건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다양화(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하고 사업모델별 공적의무와 인센티브를 균형적으로 차등화하고 있는 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사업모델별 주요 세제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음

구분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지원 모두 최소화 민간임대법상 모든 임대로 규제 배제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기간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로 인상 5% 상한 등 공적의무 부여 기금융자 등 인센티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 임대료 제한(시세 95%) 무주택자 우선공급 등 공적 의무 강화 기금출·융자와 공공택지 할인공급 등 인센티브 강화
세제 지원	<p>① 법인 중과세제 배제 (취득세·종부세·법인세)</p>	<p>① 법인 중과세제 배제 (취득세·종부세·법인세)</p> <p>② 취득세·재산세 감면</p>	<p>① 법인 중과세제 배제 (취득세·종부세·법인세)</p> <p>② 취득세·재산세 감면</p>

① 법인 중과세제 배제 (취득세·종부세·법인세)

- 임대의무기간(20년) 및 유형별 임대로 증액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12%)·종부세 합산·법인세 추가과세(20%) 배제
 - 종부세 합산·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기액기준: 건설 15억·매입 12억 (비수도권 9억)

② 취득세·재산세 감면

- 공동주택·오피스텔·임대형기숙사 취득세:
60㎡ 이하 75%·85㎡ 이하 25% 감면 (기축매입 전체 및 오피스텔 신축건설 제외)
- 공동주택·오피스텔·임대형기숙사 재산세:
40㎡ 이하 75%·60㎡ 이하 50%·85㎡ 이하 25% 감면



정부,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 발표

정부는 2025년 국세수입 예산을 2024년 예산 367.3조 원 대비 15.1조 원 증가한 382.4조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 중 소득세는 임금 상승·취업자 증가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 세 증가와 주요 기업 실적개선 등에 의한 배당소득세 증가 등으로 인해 2024년 예산 대비 2.2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법인세는 기업실적 호조 등에 따라 2024년 예산 대비 10.8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가가치세도 민간소비 증가·수입 확대 등에 따라 2024년 예산 대비 6.6조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정부,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 제출

2023년 국세감면액은 69.8조 원으로 R&D세액공제·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2022년 대비 6.2조 원 증가했으며, 올해 2024년 국세감면액은 사회보험료 등 공제 증가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등으로 2023년 대비 1.6조 원 증가한 71.4조 원으로 전망되며, 내년 2025년 국세감면액은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증가 등으로 올해 2024년 대비 6.6조 원 증가한 78조 원으로 전망되는 한편, 올해 조세지출예산서에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출 분류체계를 기존의 16대 분야 분류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기능별 12대 분야 분류로 일원화함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감면액·국세감면율 (단위: 억원, %)

구분	2023년 실적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국세감면액 (A)	697,664	714,305	780,178
국세수입총액 ^{*1} (B)	3,703,803	3,949,465	4,122,410
국세감면율 [A/(A+B)]	15.8	15.3	15.9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2}	14.3	14.6	15.2

*1 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 (2023년은 결산, 2024년, 2025년은 세입예산 기준)

*2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

최신 주요 개정 동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50호, 2024. 8. 20.)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는 중소기업 간주기간 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전문연구평가기관 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344호, 2024. 2. 20. 공포, 8. 21. 시행 및 법률 제20362호, 2024.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 합병한 경우 합병된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기간 동안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처분의 적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이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그 명칭 을 변경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65호, 2024. 8. 30.)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66호, 2024. 8. 30.)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최신 예규·판례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과 주식을 미보유한 본인의 특수관계 여부

■ 쟁점사항

- 국세기본법은 본인이 본인과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본인과 그 법인은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고(국기령 §1의 2 ③ 1호), 이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법인의 주식을 30% 이상 출자한 경우 또는 임원의 임면권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국기령 §1의 2 ④ 1호), 이번 판례의 쟁점은 본인의 친족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주식을 미보유한 본인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본인의 친족이 30% 이상 출자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이에 더해 본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임

■ 판결요지

-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본인이 아닌 본인의 친족이 해당 법인에 30% 이상을 직접 출자한 경우에는 친족의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인정할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본인이 친족을 통하여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본인이 해당 법인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없이 본인의 친족이 해당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본인과 해당 법인간의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함 (대법원2022두63386, 2024. 7. 25.)

■ 시사점

- 기획재정부는 본인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본인의 친족이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에는 본인과 해당 법인 사이에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였으나(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59, 2022. 7. 15.),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달리 본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비로소 본인과 해당 법인 간의 특수관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밝히고 있는 바, 이는 본인이 직접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본인의 친족이 법인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법인에 대한 임원 임면권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과 같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이 추가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해당 법인 간의 특수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입장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필지가 동일한 토지의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의 토지 평가방법

■ 쟁점사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환산한 평가액(상증령 §50 ⑦, 이하 ‘임대료 환산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상증법 §61 ①~④, 이하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상증법 §61 ⑤),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동일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만을 임대한 경우, 임대하지 않은 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에 대한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대료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임대하는 토지와 임대하지 않은 토지를 구분하여 임대하는 토지는 임대료 환산 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임대하지 않은 토지는 기준시가로 각각 평가하는지 여부임

■ 회신요지

- 이에 대해 이번 유권해석은 평가기준일 현재 한 필지의 토지에 대해 일부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된 부분은 임대료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임대되지 않은 부분은 기준 시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동일한 필지의 토지일지라도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이용가치는 상이한 것이므로 그 평가방법 또한 각각 구분하여 달리 평가 해야만 합리적인 평가가액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견해가 반영된 해석으로 판단됨 (**기준-2024-법규 재산-0025, 2024. 6. 20.**)

■ 시사점

- 한편, 과거 유권해석은 층별·호수별로 구분 등기되지 않은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하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사용하거나 공실인 부분을 포함한 전체 건물의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대료 환산 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을 평가가액으로 적용하도록 해석하고 있었으나(서면인터넷방문상담 4팀-3694, 2007. 12. 27. 및 재산세과-859, 2010. 11. 18, 2021. 7. 6. 삭제), 국세청은 이번 유권 해석처럼 임대 부분은 임대료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공실 부분은 기준시가로 각각 평가하여 합산하도록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하였는 바(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3, 2021. 6. 4.), 필지가 동일한 토지나 또는 구분 등기되지 않은 단일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하는 경우의 토지와 건물의 상증법상 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임대 부분과 공실 부분 등을 구분하여 각각 상이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제조업용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 쟁점사항

- 통합투자세액공제 규정에서는 차량운반구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하는 불도저·굴착기·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지방세법에 의한 기계장비(지침 §3 및 별표 1)는 예외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조특칙 §12 ③ 3호, 이하 '쟁점규정'), 이번 결정례의 쟁점은 건설업이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투자한 콘크리트 믹서트럭(이하 '쟁점트럭')이 지방세법과 건설기계관리법상 기계장비로 분류되므로 통합투자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쟁점트럭이 건설업을 위해 사용하는 덤프트럭이 아니므로 통합투자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임

■ 결정요지

- 이에 대해 이번 결정례는 쟁점트럭이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분류되고(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2 및 별표 1), 청구법인이 쟁점트럭을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취득세를 부담하였으나, 쟁점규정은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지방세법상 기계장비만을 공제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목적사업의 하나인 건설업을 위해 쟁점트럭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상으로 도 건설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은 쟁점트럭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음 (조심2024인0386, 2024. 7. 22.)

■ 시사점

- 따라서, 불도저·지게차·로더·콘크리트 믹서트럭과 같은 건설기계에 투자한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를 지방세법상 기계장비로 분류하여 취득세를 납부했다는 이유로 차량운반구가 아닌 기계장비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또는 건설기계를 건설업을 위해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목적사업에 건설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설기계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한 후 신청 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할납부 특례 적용 여부

■ 쟁점사항

- 조특법에서는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2억 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조특법 §16의 2, 이하 ‘비과세특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5년간 소득세를 분할납부하거나(조특법 §16의 3, 이하 ‘분할납부 특례’)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점에 양도소득세로 과세(조특법 §16의 4, 이하 ‘양도소득 과세특례’)하는 특례제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비과세 한도 내인 것으로 오인하여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행사이익에 대한 분할납부 특례 신청서를 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에도 분할납부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임

■ 회신요지

- 이에 대해 이번 기재부 유권해석은 종전 국세청 유권해석(기준–2017–법령해석소득–0302, 2018. 6. 11.)과 달리 분할납부 특례 신청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조특령 §14의 3 ②·⑤)하지 않고 기한 후에 제출하더라도 분할납부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며, 이는 분할납부 특례가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이른바 신청감면 사항이 아니라 특례요건 충족 시 당연히 적용되는 당연감면 사항이라는 취지의 해석으로 이해되며, 이번 유권해석은 기한 내 비과세 특례 적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비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사전–2021–법령해석소득–1341, 2021. 10. 27.)과도 동일한 입장의 해석으로 판단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54, 2024. 7. 17.)

■ 시사점

- 따라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기한 내에 분할납부 특례 또는 비과세특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각각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양도 소득 과세특례의 경우에는 특례적용신청서 제출과 전용계좌 개설 등 절차적 요건을 법정기한 내에 충족한 경우에만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2, 2021. 4. 29. 외), 이는 납세자의 양도소득 과세특례 선택 여부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의 소득세 과세 여부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지므로(조특법 §16의 4 ④),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특례 신청 여부에 관한 납세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 해석으로 판단되는 바(조심2021서6907, 2022. 12. 13.), 분할납부 특례 또는 비과세특례와 달리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기한 내에 특례신청서 제출 등의 절차적 요건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본 최신 예규·판례 내용은 유권해석과 판례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Tax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조 한 철 Partner

han-chul.cho@pwc.com
02-3781-2577

정 재 훈 Partner

jae-hoon_3.jung@pwc.com
02-709-0296

김 태 훈 Partner

taehoon.kim@pwc.com
02-3781-2348

공 성 덕 Managing Director

seongdeok.kong@pwc.com
02-709-7056

조 영 현 Director

young-hyun.jo@pwc.com
02-3781-9238

이 민 재 Director

min-jae_1.lee@pwc.com
02-709-8320

삼일회계법인 뉴스레터는 삼일회계법인의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배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문제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의 뉴스레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Samil PwC newsletter has been prepared for the provision of general information and knowledge for clients of Samil PwC, and does not include the opinion of Samil PwC on any particular accounting or tax issues. If you need further information or discussion concerning the content contained in the Samil PwC newsletter, please consult with relevant experts.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here [unsubscription](#).

© 2024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